

# 농약가격표시제 전면실시

농  
수  
산  
부

1월 1일부터 전 유통품목을 대상으로  
재고 이월농약은 5월 말까지 스티커 부착

농수산부는 농약 가격표시제를 금년 1월 1일부터 실시, 공정거래 질서를 확립하고 농약 가격에 대한 민원을 일소키로 했다.

농수산부가 12월 28일 고시한 「농약 유통 유지질서 명령 2호」에 따르면 시중 유통농약 및 농협 농약에 각각 권장 소매가격 및 판매가격을 표시하고 재고, 이월농약에 대해서는 5월 말까지 스티커 등을 제작, 부착하여 가격을 표시토록 했다.

한편 국립농업자재 검사소는 「농약의 포장 및 표기기준」

의 일부를 개정고시하여 좌측 또는 우측이나 약효보증기간과 제조 모집단 표시 우측이나 하단여백에 표시해 소비자가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했다.

그런데 농약 가격에 대한 민원은 주로 돌발병해충이 발생하여 소비자의 선호성이 높은 특정 농약이 품귀현상을 빚을 때 일부 시판상에서 고가(高価)로 판매한다는 사례에서 기인된 것으로 이번 가격표시제로 소비자의 가장 큰 민원이 해결되게 된 것이다.